의안번호	제 361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월 일 (제280회)

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4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61

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29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○ 도내 대학과 기업의 연계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방안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」 기능을 확대하고

○ 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관련분야 위원을 보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확대 (제2조)
-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협의·조정 기능 추가

○ 협의회 관련분야 위원 보강 (제3조)
-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
- 30명 이내 → 40명 이내

○ 실무위원회 위원 보강 (제7조)
- 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른 실무위원회 관련분야 위원 보강
-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

○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

3. 조례안 전문 : 별첨

4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"30인"을 "40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

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"10인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획관리실장"을 "정책관리실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하며, "기획관"을 "정책기획관"으로 한다.

제3조,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 중 각 항과 조문은 띄어 쓴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·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 1.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.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. 우수 학교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 4.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. 기타 충청북도(이하 "도'라 한다)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·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 1.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.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. 우수 학교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 4.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**5.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** **6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** **7. 기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**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1. 도의회 의장 2. 도교육감 3. 도교육위원회 의장 4.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. 민간사회단체장 6.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	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**1명**을 포함한 **40명**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1. 도의회 의장 2. 도교육감 3. 도교육위원회 의장 4.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. 민간사회단체장 **6.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** **7.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**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**(단서 신설)**	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**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**
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 등)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,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 된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 등)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**1명**을 포함 한 **15명**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**정책관리실장**으로 하고,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 된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8조(간사) 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. ②위원회 간사는 기획관으로 하고,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	제8조(간사)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**1명**을 둔다. ② **협의회** 간사는 **정책기획관**으로 하고,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 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